

대법원 2022. 10. 14 선고 2022다25520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0. 14 선고 2022다255201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2. 6. 22 선고 2020나96276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4 선고 2020가소607467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22. 10. 14.

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0나96276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동원, 주 심 대법관 조재연, 대법관 민유숙, 대법관 천대엽